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결정 보좌 업무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및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신설(안 제2조2항)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7)
 -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6급 1명 감 / 9급 1명 증)

개정규칙안: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의2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 ~ 2026. 7. 20(10일간)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민소통· 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자치행정업무 발굴 및 조정 등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86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희 진
	조 직 팀 장	이 은 경
	담 당 자	박 장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민소통· 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자치행정업무 발굴 및 조정 등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한다.</u></p>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도: 3급 이상

2. 시·군·구: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실·국·본부 및 실·국(전년도 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한시기구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 및 관련조문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4. 23) 제1조

나. 비용 발생 요인(연간)

○ 전문임기제 나급(5급) 연봉 상한액 : 91백만원 * 3인 = 273백만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연봉상한액 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1,206	114	273	273	273	273
인 건 비	1,206	114	273	273	273	273

* 2026년도는 5개월분(8~12월)으로 계산

다. 재원조달방안: 필요시 2026년 추경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조직팀장 이은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1,206	114	273	273	273	273
인 건 비		1,206	114	273	273	273	273
세 출		1,206	114	273	273	273	273
인 건 비		1,206	114	273	273	273	273
재원 조달		1,206	114	273	273	273	273
자체 수입	소 계	1,206	114	273	273	273	273
	지방세	1,206	114	273	273	273	273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03.01 규칙 제 17호

(일부개정) 2026.06.26 규칙 제8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실·국·소·본부장은 시장·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국·소·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7. 13., 2023. 12. 26.>

제3조(직급) ① 과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8., 2023. 2. 13.>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문산보건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과주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6., 2025. 6. 30.>

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과장·소장·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7. 13., 2022. 12. 28., 2023. 12. 26.>

⑤ 삭제 <2021. 7. 13.>

⑥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제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국·소·본부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국·소·본부 내 부서 간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본부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3. 12. 26.>

제5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 <개정 2020. 12. 28., 2026. 6. 26>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행정지원과-19562(2026. 7. 6.)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산법무과장명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동계 2026. 7. 8.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연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1381 (2026. 7. 8.) 접수 행정지원과-19883 (2026. 7. 8.)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3		
정책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박장호	전화번호 031-940-86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7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행정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행정지원과-19563(2026. 7. 6.)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33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사2팀장 **이선** 감사관 **전걸** 2026. 7. 8.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8228 (2026. 7. 8.) 접수 행정지원과-19929 (2026. 7. 8.)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33		
자치법규명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박장호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8.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